

5 행정운영경비

5-1. 기본경비 집행현황

-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, 공공요금, PC 등 물품구입,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. 우리 충청북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분	세출결산액 (A)	기본경비 (B)	비율 (B/A)	비 고
합 계	3,458,003	9,187	0.27%	
		2,720	0.08%	
여 비		3,464	0.10%	
업무추진비	3,458,003	1,558	0.04%	
직무수행경비		714	0.02%	
자산취득비		731	0.02%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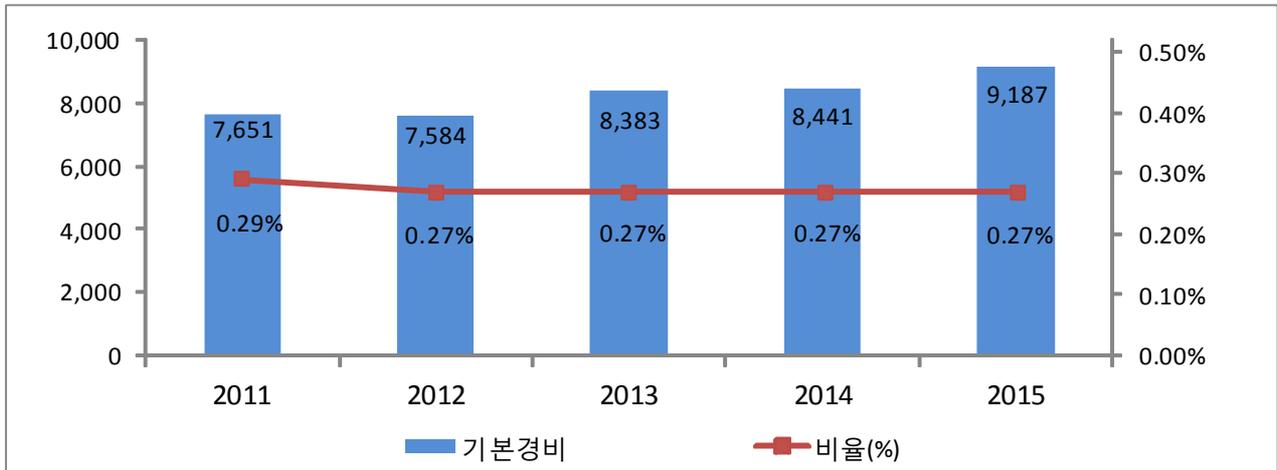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행정운영경비의 설정' 중 기본경비 항목
- ▶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(201-01)+공공운영비 (201-02), 여비는 국내여비 (202-01)+월액여비 (202-02),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3-01)+정원가산업무추진비 (203-02)+부서운영업무추진비 (203-04),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(204-01),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(405-01)

❖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분	연 도 별				
	2011	2012	2013	2014	2015
	2,682,121	2,805,471	3,064,855	3,182,188	3,458,003
기본경비	7,651	7,584	8,383	8,441	9,187
비 율	0.29%	0.27%	0.27%	0.27%	0.27%

기본경비 연도별 변화



5-2. 자치단체 청사 관리·운영현황

-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,870m²이 적어 보통교부세 수요액 반영은 없습니다.

공공청사 보유 면적(m ²)	충청북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(m ²)	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(m ²)	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(백만원)
16,825	24,695	△7,870	-

- ▶ 「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」의 지방청사(면적)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

5-3. 인건비 집행현황

☐ 우리 충청북도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분	세출결산액 (A)	인건비 (B)	비율 (B/A)	비고
합 계	3,458,003	241,471	6.98%	
(101)	3,458,003	190,115	5.50%	
직무수행경비(204)		6,135	0.18%	
포상금(303)		9,458	0.27%	
연금부담금 등 (304)		35,763	1.03%	

- ▶ 인건비는 보수 (101-01), 기타직보수 (101-02), 무기계약근로자보수(101-03),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(204-02),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(303-02),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(304-01), 국민건강보험금(304-02)이 해당함
- ▶ 보수(101-01)는 기본급, 수당,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명절휴가비, 가계지원비, 연가보상비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(7개 통계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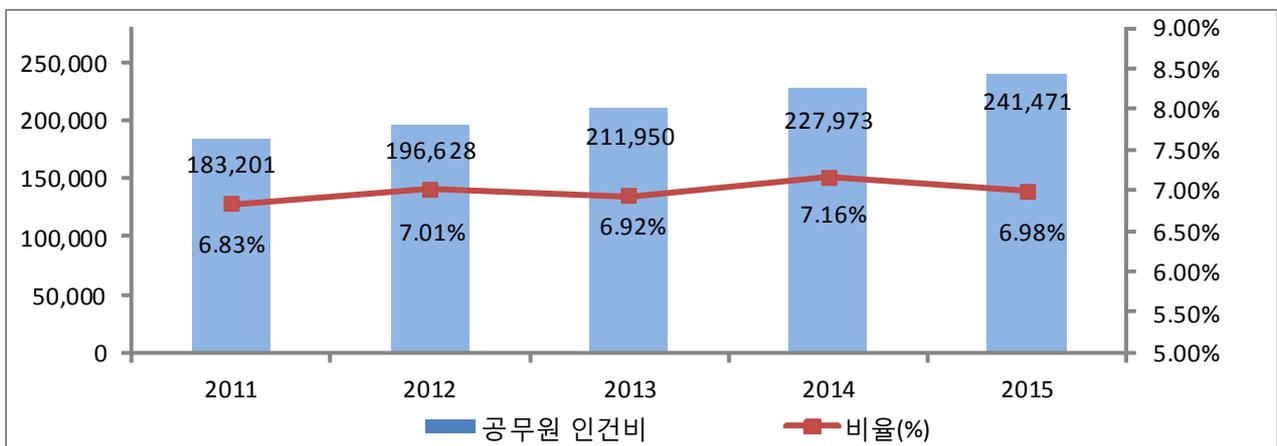
❖ 인건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1	2012	2013	2014	2015
세출결산액(A)	2,682,121	2,805,471	3,064,855	3,182,188	3,458,003
인건비(B)	183,201	196,628	211,950	227,973	241,471
인건비비율(B/A)	6.83%	7.01%	6.92%	7.16%	6.98

인건비 연도별 변화

(단위 : 백만원)



5-4. 업무추진비 집행현황

☐ 우리 충청북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분	세출결산액 (A)	업무추진비 (B)	비율 (B/A)	비 고
합 계	3,458,003	2,176	0.06	
(203-01)	3,458,003	758	0.02	
시책추진업무추진비 (203-03)		1,417	0.04	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15년 결산결과 203-01, 203-03 집행총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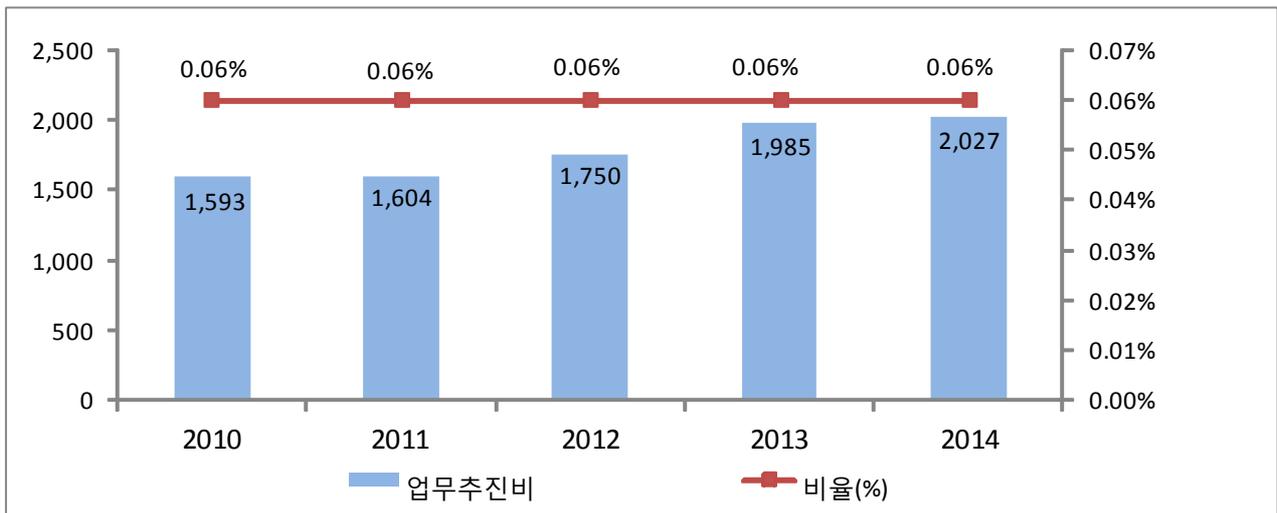
❖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11	2012	2013	2014	2015
세출결산액	2,682,121	2,805,471	3,064,854	3,182,188	3,458,003
업무추진비	1,604	1,750	1,985	2,027	2,176
비율	0.06%	0.06%	0.06%	0.06%	0.06%

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

(단위 : 백만원)



◆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해 4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.

◆ 집행내역은 [별첨 5-4]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참조하세요.

(<http://www.cb21.net/finance/contents.do?key=3028>)

5-5. 국외여비 집행현황

☐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	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	출장지역	총 출장 인원(명)	국외여비 집행액 (백만원)	비고
	(별첨 5-5 참조)				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(202-03 국외업무여비, 202-04 국제화여비)

◆ 집행내역은 [별첨 5-5] 국외여비 집행현황을 참조하세요.

(<http://www.cb21.net/finance/contents.do?key=3028>)

5-6.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

☐ 우리 충청북도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세출결산액 (A)	의회경비 집행액 (B)	의회경비 비율 (B/A)	지방의원 정수 (C)	1인당 의회경비 (B/C)(천원)
3,458,003	2,289	0.07%	31	73,8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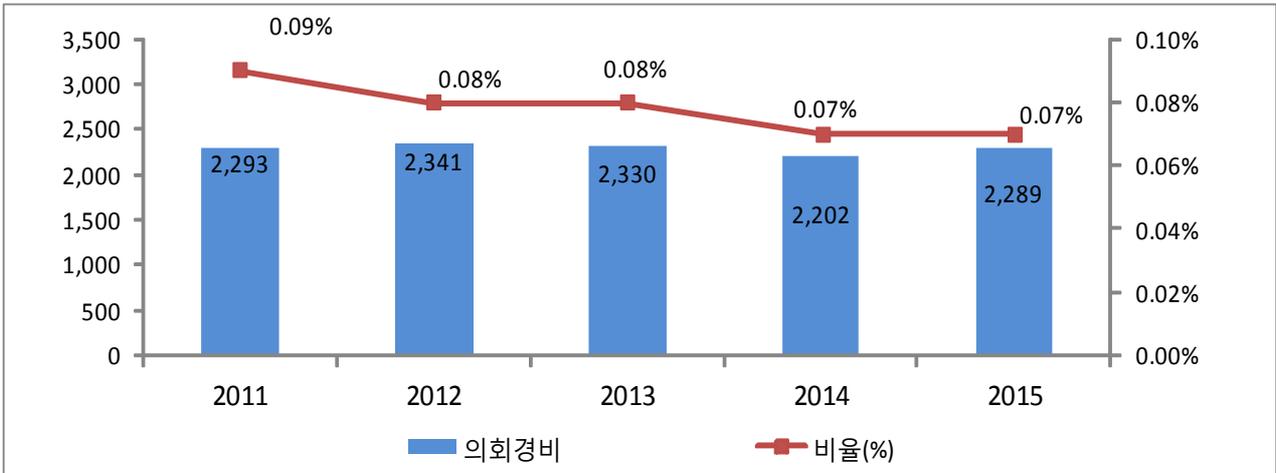
- ▶ 대상 회계 및 집행액 : 일반회계, '14년 결산결과 의회비(205-01~09) 집행액
- ▶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(205-01), 월정수당 (205-02), 국내여비 (205-03), 의정운영공통 경비 (205-05), 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5-06), 의장단협의체부담금 (205-07), 의원국민연금부담금 (205-08), 의원국민건강부담금 (205-09)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(205-04)임

❖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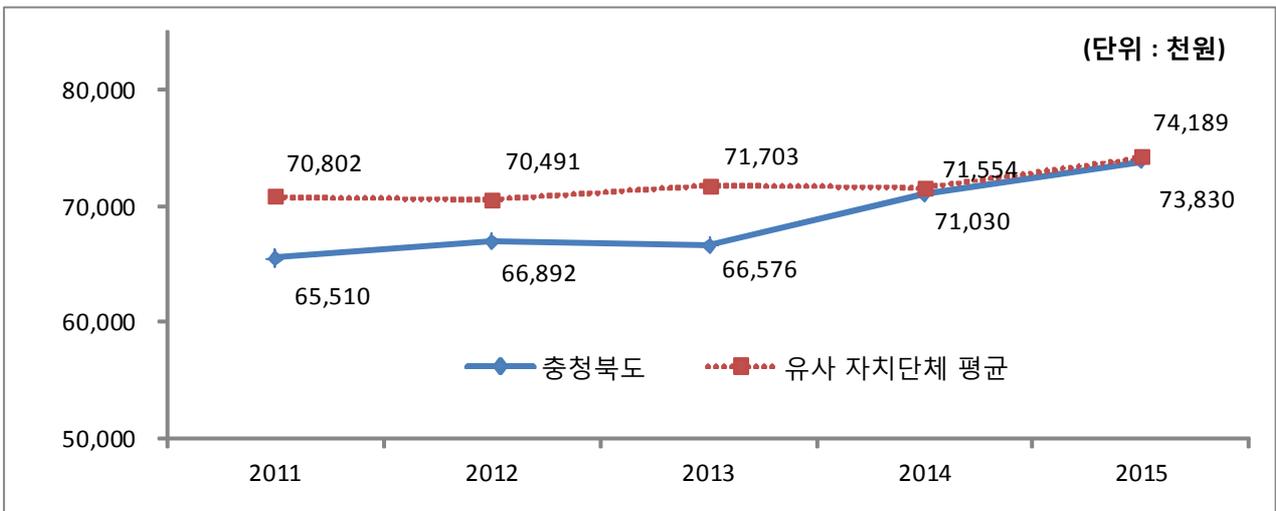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11	2012	2013	2014	2015
세출결산액	2,682,121	2,805,471	3,064,855	3,182,187	3,458,003
의회경비	2,293	2,341	2,330	2,202	2,289
의원 정수	35	35	35	31	31
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	0.09%	0.08%	0.08%	0.07%	0.07%
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(천원)	65,510	66,892	66,576	71,030	73,830

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



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단체와 비교



5-7.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집행액 (A)	지방의원 정수(명) (B)	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(A/B)(천원)
79	31	2,563

▶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, 지방의원 정수는 2015.12.31.일 기준

❖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

(단위 : 천원, 명)

	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	출장지역	출장의원수 (동행공무원)	국외여비 집행액
1.27~1.29	상하이 도 사무소 개소식 참석		3 (1)	3,379
3.16~3.26	산업경제위원회 정책 테마연수	스페인, 포르투갈, 모로코	5 (3)	26,500
4.1~4.9	행정문화위원회 정책 테마연수	미국	6 (3)	30,000
6.1~6.4	중국 흑룡강성 우호교류	중국	6 (4)	3,836
8.24~8.29	몽골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 참석	몽골	1	1,774
9.8~9.12	우즈베키스탄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 참석	우즈베키스탄	1	2,215
10.27~10.30	중국 길림성 우호교류	중국	6 (4)	6,546
10.24~11.2	선진소방 국외 정책조사 연수	미국	1	5,213

☞ 2015회계연도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액은 7천9백만원이며, 1인당 집행액은 256만원입니다.

5-8. 맞춤형복지비 현황

■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(도지사, 군수, 구청장)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, 2015년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대상인원 (A)	세출 결산액 (B)	맞춤형 복지비 (C)	비율 (C/B)	1인당 평균배정액 (C/A)(천원)
3,826	3,458,003	4,457	0.13	1,16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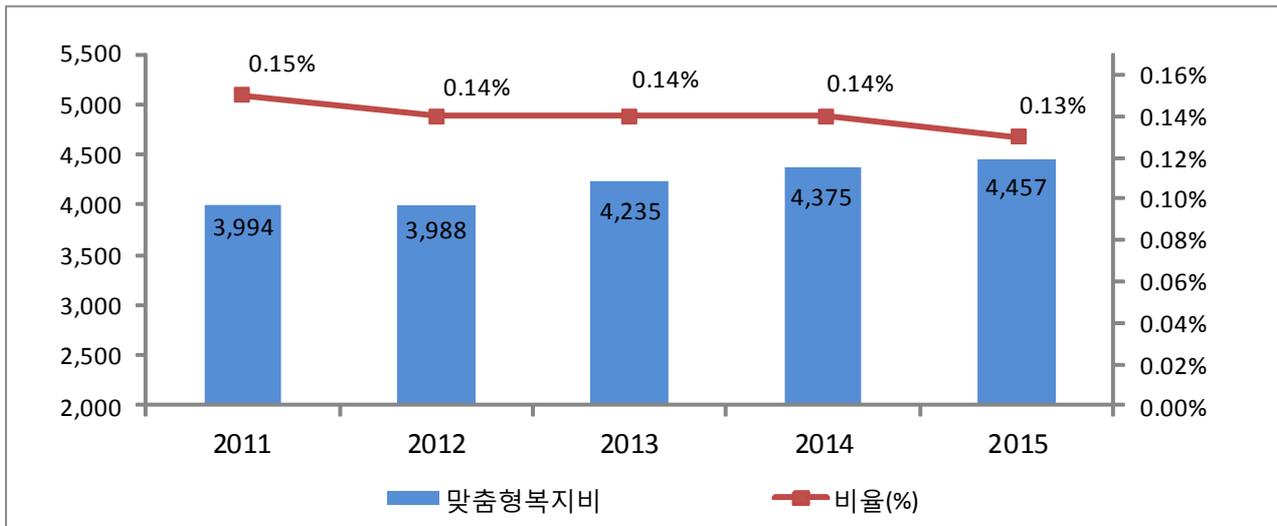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
- ▶ 세출결산액 : '15년 세입·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
- ▶ 맞춤형복지비 : '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-사무관리비(201-01) 중 7.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

❖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1	2012	2013	2014	2014
대상인원 (A)	3,279	3,350	3,430	3,735	3,826
세출결산액 (B)	2,682,121	2,805,471	3,064,855	3,182,188	3,458,003
맞춤형 복지비 (C)	3,994	3,988	4,235	4,375	4,457
비율(C/B)	0.15	0.14	0.14	0.14	0.13
1인당 평균배정액 (C/A)(천원)	1,218	1,225	1,235	1,171	1,165

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



- ☞ 2015년도 맞춤형복지비는 2014년대비 8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대상인원 91명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되었음(2014년부터 시작된 기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 정착화 되어 이용가능 대상자가 증가함)

5-9. 연말지출 비율

- 우리 충청북도에서 2015년 11월~12월 중에 지출(원인행위)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연말 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 (B)	비율 (B/A)
계	136,924	22,433	16.38
시설비 (401-01)	135,342	22,382	16.54
감리비 (401-02)	1,343	-	-
시설부대비 (401-03)	239	51	21.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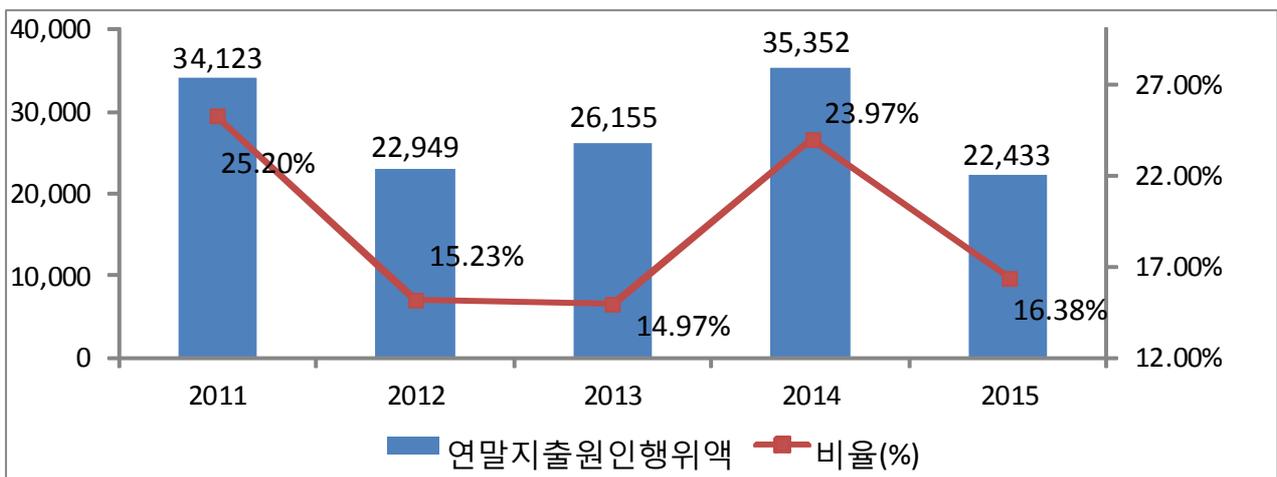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본청분만 해당(직속기관, 사업소 등은 제외)
- ▶ 세출결산액은 목별(시설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, 행사관련시설비) 지출액

❖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분	연도별				
	2011	2012	2013	2014	2015
(A)	135,408	150,709	174,723	147,469	136,924
연말 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 (B)	34,123	22,949	26,155	35,352	22,433
비율(B/A)	25.20	15.23	14.97	23.97	16.38

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



- ◆ 2014 오송첨단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164억원이 연말에 지출되어 비하여 연말지출 금액 및 비율이 높았으나 2015년도는 균형집행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연말 지출비율이 낮아졌습니다.

5-10.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

☐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분	2014연말 체납누계액(A)	2015연말 체납누계액(B)	증감액(B-A)
계	27,965	31,046	3,081
지방세	26,362	29,312	2,950
세외수입	1,604	1,734	1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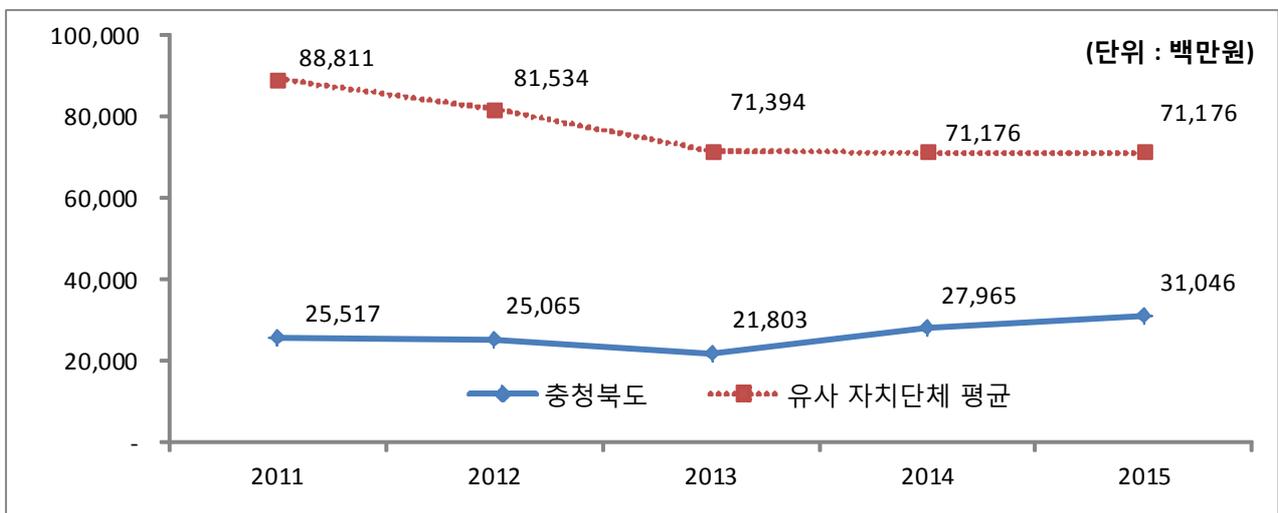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

❖ 체납액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분	연 도 별				
	2011	2012	2013	2014	2015
합 계	25,517	25,065	21,803	27,965	31,046
지방세	24,076	23,235	20,114	26,362	29,312
세외수입	1,441	1,829	1,689	1,604	1,734

체납액 유사단체와 비교



- ☞ 2015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'14년도 대비 11.0%(31억원)이 증가한 310억원으로 지방세 293억원, 세외수입이 17억원 임.
- ☞ 주요 체납사유는 무재산, 행방불명,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이 대다수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,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,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.

5-11.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

-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, 그 성격은 일반재원(기타수입, 223-09)에 해당합니다.

우리 충청북도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❖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분	금고은행	약정기간	약정기간 총액	예산 편성액	실제 출연액	세입 처리액
계			6,500	2,100	2,100	2,100
제1금고	농협은행	'15.01.01~ '17.12.31.	5,500	1,800	1,800	1,800
제2금고	신한은행	'15.01.01~ '17.12.31.	1,000	300	300	300

- ▶ 1금고 :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,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
- ▶ 제2금고 등 :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,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
- ▶ '15.1.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('14.5.28)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

❖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 · 집행내역(해당 없음)

- ▶ 용도지정 없이 일반예산으로 편성 집행